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30일, 송옥주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그 실적을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 상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미함.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은 ① 소비자가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점, ② 농산물에 대한 지역 내 자급자족(自給自足)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현행법 제9조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①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등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등 지원, ② 사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③ 우수 사례 발굴·홍보·포상, ④ 우수 실적 지자체 지원, ⑤ 기관 평가 시 실적 반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 비계량지표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음.

다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의 비중은 전체 평가 점수 100점 중 4%인 4점에 불과한 상황임.

이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현행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공공기관 평가 지표의 하나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에 따른 보상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민간기업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할 유인이 다소 부족한 상황임.

특히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의 이윤극대화 성향으로 인하여 지역농산물보다 가격이 다소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포상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부 민간기업(민간 로컬푸드 직매장, 사회적경제조직 등)에도 적용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음.

즉, 현행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됨.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은 매장별 홍보비, 기획기사·사례집 제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제9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 실천 모델 확산 사업’에 따라 로컬푸드(Local Food, 지역먹거리)를 활용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모델로 선정되는 경우 운영비(홍보비, 인건비 등) 및 기획기사·사례집 제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모든 민간기업이 아닌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등 일부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해당 규정은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 촉진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